

# 해외수산물 유통구조와 현황

水産業協同組合 流通部

丁 活

— 목 차 —

- 1. 서 언
- II. 일본의 수산물 유통현황
- III. 대만의 수산물 유통현황

## I. 서 언

수산물의 유통개선 내지 유통의 합리화는 유통경로상의 단계축소와 경비절감을 통하여 어업생산력 증강과 생산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소비자들을 동시에 보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수산물유통의 특징은 생산시기와 입지적 조건, 유통경로의 다단계, 유통마진의 과다 등 제반여건에 따라 유통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수산물유통의 구조적 실태이다. 수산물은 수산물 그 자체가 지닌 특성과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말미암아 수급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우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매체인 중간유통의 조작회수, 거래단계 등에 따라 수산물가격의 진폭도 비례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이상으로 판매가격이 형성되어야 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이 비로소 이상적인 유통의 합리화가 이룩될 것이다. 수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과 유통개선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어가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수산물의 유통실태는 어떠한 지 일

본·대만지역을 중심으로한 시장거래제도 등에 주안하여 조명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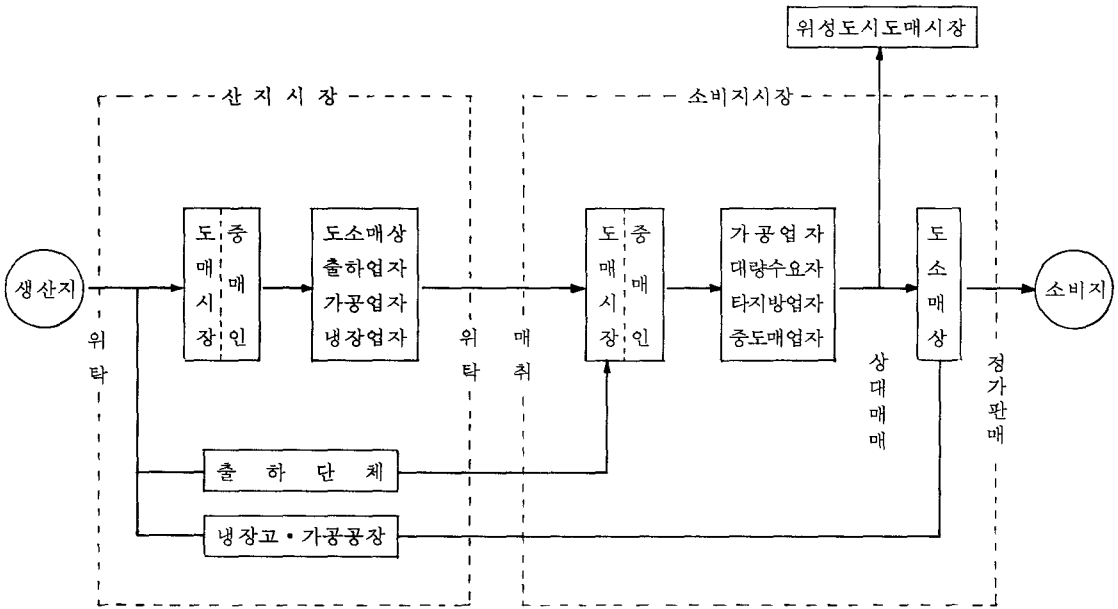
## II. 일본의 수산물 유통 현황

### 1. 유통경로

일본의 수산물 유통경로는 5~6 단계로써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산지시장, 소비지시장, 위성도시시장으로 이어지는 3중경매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도해하면 그림 1과 같이 생산자로부터 위탁된 물량은 산지의 도매시장에 1차 상장되고 중매인을 거쳐 출하업자, 가공업자, 냉장업자에게 이어지며 다시 위탁 또는 매취를 거쳐 소비지 중앙도매시장으로 반출 2차 상장된다. 여기에서도 중매인에 의한 경매를 거쳐 소비지의 가공업자를 비롯하여 대량수요자, 타지방업자, 중도매업자에게 이행하며 상대매매형식으로 인근의 위성도시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거나 소매상으로 이어지며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정가판매하는 것이 일반적 유통경로이다. 이러한 다단계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로부터 출하단체나 냉동고, 가공공장을 통하여 소비지 도매시장과 소매상으로 직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계통출하와 비슷한 양상이다.

수산물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3년도 수산물 총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6.0% 증가한 13,013천톤(鯨類 및 해조류 제외)으로써 이중 11,181천톤이 국내생산되었고 1,832천톤이 수입으로 충당된 반면 총수요량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12,477천톤이 수요되었는데 이는 수출량이 상대

그림 1 일본의 수산물 유통경로도



자료 : 일본국 전어련(全漁連) 제공.

표 1 수산물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년도별	1979	1980	1981	1982	1983(p)	증(△) 감(음) (%)		
							'81/'80	'82/'81	'83/'82
공급	총공급량	11,006	12,114	12,268	12,280	13,013	1.3	0.1	6.0
	• 국내생산	9,918	10,425	10,671	10,753	11,181	2.4	0.8	4.0
	식용	7,552	7,421	7,154	7,066	7,131	△ 3.6	△ 1.2	0.9
	비식용	2,366	3,004	3,517	3,687	4,050	17.1	4.8	9.8
	• 수입	1,088	1,689	1,597	1,527	1,832	△ 5.4	△ 4.4	20.0
수요	식용	752	1,027	1,200	1,320	1,383	16.8	10.0	4.8
	비식용	336	662	397	207	449	△ 40.0	△ 47.9	116.9
수요	총수요량	11,006	11,757	12,140	12,528	12,477	3.3	3.2	△ 0.4
	• 국내소비	10,016	10,734	11,121	11,264	11,550	3.6	1.3	2.5
	식용	7,549	7,666	7,677	7,643	7,834	0.1	△ 0.4	2.5
	비식용	2,467	3,068	3,444	3,621	3,716	12.3	5.1	2.6
	• 수출	990	1,023	1,019	1,264	927	△ 0.4	24.0	△ 26.7
재고량	식용	755	817	667	617	547	△ 18.4	△ 7.5	△ 11.3
	비식용	235	206	352	647	380	70.9	83.8	△ 41.3
재고량		-	357	128	△ 248	536			

자료 : 농림수산성, 「식료수급표」.

주 : 1) 생물기준. 2) 경류(鯨類) 및 해조류 제외 수치임.

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내소비량은 생선, 냉동염제품, 통조림 등 7,834 천%이 식용화되었고 3,716 천%이 사비료, 어업용이료 등으로 소비되고 있다.

1983 년도 일본의 국민 1 인 1 일당 동물성단

백질 공급량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에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 중 수산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급량은 17.6 %으로써 전체의 44.4 %를 점하고 있다(표 2)

표 2 국민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 추이

(단위 : gr)

구 분	1979		1980		1981		1982		1983(P)	
		%		%		%		%		%
합 계	(20.3) 34.9	(100.0) 100.0	(20.2) 38.7	(100.0) 100.0	(21.7) 38.8	(100.0) 100.0	(22.7) 38.7	(100.0) 100.0	(25.5) 39.6	(100.0) 100.0
수 산 물	(11.0) 17.7	(55.0) 50.7	(10.7) 18.0	(53.0) 46.5	(13.1) 17.6	(60.4) 45.4	(13.7) 17.1	(60.4) 44.2	(14.9) 17.6	(58.4) 44.4
축 산 물	(9.3) 17.2	(45.0) 49.3	(9.5) 20.7	(47.0) 53.5	(8.6) 21.2	(39.6) 54.6	(9.0) 21.6	(39.6) 55.8	(10.6) 22.0	(41.6) 55.6
• 육 류	8.4	24.1	11.0	28.4	11.1	28.6	11.5	29.7	11.8	29.8
•계 란	4.6	13.2	4.8	12.4	4.9	12.6	4.9	12.7	4.9	12.4
•우유, 유제품	4.3	12.0	4.9	12.7	5.2	13.4	5.2	13.4	5.3	13.4

자료 : 농림수산성, 「식료수급표」.

주 : ( ) 안은 우리나라 국민 1인 1일당 단백질 공급량임.

## 2. 도매시장의 종류와 개설요건

일본의 수산물 유통의 모체가 되는 시장은 關東・關西・東京・大阪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지역적으로 약간의 특색을 갖고 있다.

일본 시장제도의 변천을 개략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근대적 시장제도는 1922년(大正 11년 제 46 회 제국의회)에 중앙도매시장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기존도매시장의 흡수·통합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되어 일본 최초의 중앙도매시장으로써 京都市 중앙도매 시장이 탄생되었으며 1930년에 高知市 중앙판매 시장 1931년에 横濱市, 大阪市 중앙도매 시장, 1933년 神戸市 중앙도매 시장, 1935년 東京市 중앙도매 시장이 각각 탄생되었다.

이와 같이 발족된 중앙도매시장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제 2차 세계대전 등으로 시장 본래의 가격형성기능은 발휘되지 못하고 단순히 집하분산하는 장소에 그쳤으나, 전후 자유경제로의 복귀로 중매인제도가 부활되고 1950년 한국

동란을 계기로 일본경제의 부흥에 따라 중앙도매 시장의 신장도 계속되어 왔다. 1958년에 이르러 생선식료품의 유통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생선식료품의 집배거점으로써 다수생산자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다수소매상에게는 안정적인 공급선을 제공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되어 1968년부터 시장법의 전면 개정에 착수하여 각계각층의 의견과 공청회를 거쳐 제정된 새로운 도매시장법이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새로이 제정된 시장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종다량물량의 능률적 집배기능의 충실
- 도매시장의 계획적 배치 및 시설의 정비촉진
- 도매시장 관련 시설의 촉진
- 공정타당한 가격형성 및 효율적인 유통의 확보
- 도매시장 관계 사업자의 건전화 및 거래개선 합리화 추진
- 지방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등의 적정화를

위한 통일적 법제화

- 기타 도매시장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일본의 도매시장의 종류는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기타도매시장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1983년 3월말 현재 어시장분포상황을 보면 중앙도매시장은 산지에 7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지방도매시장은 산지에 260개소, 소비지에 327개소가 있고 기타 도매시장은 산지 193개소, 소비지 444개소가 있다.

도매시장의 개설요건은 표 3에서와 같이 중앙도매시장에 있어서는 都道府縣 인구 20만명 이상의 시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개설자는 지방공공단체가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얻어 개설토록 되어 있다. 시장 내의 지정도매인은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중매인은 주식회사 및 개인 등으로 개설자의 허가를 얻어 구성되며, 매매참가인은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표 3 도매시장의 종류와 요건

	요	건	개설자 및 인가권(認可權)
중앙도매시장	○ 都道府縣인구 20만이상 시 ○ 필요시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얻어 개설하는 도매시장		○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농림수산대신 인가) ○ 지정도매인 : 주식회사(농림수산대신 인가) ○ 중매인 : 주식회사, 개인(개설자 허가) ○ 매매참가자 : (개설자 승인)
지방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서 다음 현규모 이상이어야 됨. - 청 과 : 330㎡ - 수 산 : 200㎡(산지시장 330㎡) - 식 육 : 150㎡ - 화 초 : 200㎡		○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 주식회사 농협, 어협 등(都道府縣지사 허가) ○ 지정도매인 : 개설자와 동일(都道府縣지사 허가) ○ 중매인 : 주식회사, 개인 등(개설자승인 지사제출) ○ 매매참가자 : (개설자승인 지사제출)
기타시장	○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지방정부 조례로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음.

지방도매시장은 판매장면적 청과 330㎡, 수산물 200㎡(산지수산시장 330㎡), 식육 150㎡, 화초 200㎡로 都道府縣知事의 허가를 얻어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 개설자와 지정도매인은 지사의 허가를 얻어 지방공공단체, 주식회사, 농협, 어협 등이 되며 중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개설자의 승인이나 지사의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타 매매시장은 중앙매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 시장개설은 도매시장법에서는 규정이 없으나 지방정부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일반적 주요업무는 다중대량의 물품의 집하와 판매, 도매를 통한 가격형성,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

매시장의 주요기능과 거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도매시장의 주요기능

- 집하기능 : 다종다양한 품목의 풍부한 구비
- 분산기능 : 다수 소매업자에 대한 신속한 분배
- 가격형성기능 : 경매를 주체로 한 거래에 의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신속 공정한 가격형성
- 결제기능 : 판매대금의 신속하고 확실한 정산
- 정보기능 : 수급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전달

나. 도매시장의 거래원칙

- 경매, 입찰의 원칙(예외로 상대매매 인정)
- 허가과 관련된 도매 이외의 판매행위 금지

- 차별적인 취급금지 및 수탁거부의 금지
- 도매상대방(중매인, 매참인)의 제한
- 위탁집하의 원칙(예외로 매취집하도 인정)
- 시장 외에 있는 물품의 도매금지(장외지정 보관소 예외)
- 위탁수수료 이외의 보상의 수수금지

### 3. 도매시장의 운영방법

#### 가. 산지도매시장

산지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입의상장제이며 수산물의 양육은 입항순위에 따라 생산어민이 직접 행하고 있는데 대규모 어선은 자가 또는 어협소유 콘베어벨트를 사용하고 있다. 선별은 선원 또는 생산자가족이 어종별·체장별로 입상하고 檢斤 후 입항 및 양륙순위에 따라 배열하며 위탁은 우리나라와 같이 아무런 조건없이 위탁판매한다.

경매원은 어협조합장이 임명하며 5~10년 이상 판매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판매방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지호가제에 의한 육성경매, 서면입찰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판매단위는 상자당 kg단위이고 동일어종이 일시에 다량양육할 경우에는 견본경매를 행하고 있다.

어시장의 판매수수료는 3~6.5%로 이중 0.03%~2.3%는 중매인장려금, 어민조난구휼충당금, 어민단체보조금으로 환원하고 실수수료는 2.97%~4.2%가 된다.

중매인 및 매매참가인 등의 매수인은 신용과 수산물 판매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어협이 중매인조합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1일 거래액 정도의 보증금을 담보물로 납입하며, 거래한도는 신용도에 따라 어협이 수시 조정하되 무제한 거래하고 있다.

어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생산어민에 대하여 당일 정산제원칙이며 중매인에 대해서도 당일 납입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산지도매시장의 일반적인 특징을 찾아 보면 특정어업의 어업기지와 어획물의 판매, 포장, 출하 등의 취급용이를 위해서 특정어종에 대한 취급을 전문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과량입상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등급별 선별입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

고 포장수단의 발달로 어상자를 다단으로 적치하지 않은 1단배열에 의한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상품성 제고의식이 관습화되어 있다.

판매단위는 m법으로 통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약,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급자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상도덕심 확립으로 신용거래가 극대화되어 있는 인적본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어획물의 양륙, 입상, 배열 등을 생산어민이 직접 자가처리함으로써 어획된 수산물을 정성스럽게 취급하고 있으며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 나. 소비자 도매시장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산지도매시장과 같이 입의상장제도이다. 하역방법은 노조 또는 하역업자(회사)가 결성되어 도매업자와 노조간의 협의에 의하여 노임이 결정되는데 東京都의 築地도매시장의 경우 15개 노조에 12,000명의 노조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大阪市 도매시장은 1개소의 하역회사가 있다. 배열은 반입순위에 따라 행하고 장내운반은 소형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물량확보는 출하자의 위탁과 산지로부터 자체매취가 많은데 자체매취는 규격, 저장성을 감안하여 공급상황이 안정된 품목과 특수품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한다. 판매단위는 상자당 kg단위로 하며 판매방법은 산지에서와 같은 수지호가제 서면입찰, 표찰제로 행하며 이외에 상대매매방법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상장판매수수료는 東京과 大阪의 도매시장의 경우 5.5%를 징수하여 이중 0.04~0.25%를 중매인 장려금 및 市代行業料로 환원하고 실수수료는 5.21~5.25%가 된다.

경매원의 자격은 도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를 지정도매인이 임명한다. 중매인 및 매참인 등 매수인은 판매업무에 5년이상 경험이 있고 도시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거래한도는 3일간 거래정도의 담보물 또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이 수시 조정하고 있고 어대금정산은 출하주에 대해 당일 또는 3일간으로 하며 중매인에 대해서는 3일간의 어대금납입유예기간(특약이 있을 경우 연장)을 두고 있다.

4. 포장 및 출하방법

산지와 소비지의 출하시 포장은 각각 다르지만 상인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등 어획물의 포장정도는 거의 완벽하다. 산지의 경우 소규모어업자는 어민용어상자에 입상 검근후 중량표시 상장하고 경매시 어상자 가격은 제외하여 경락 후 어민이 이를 회수 재사용하고 있다.

대규모어업자 및 가공업자는 선상냉동(참치, 가다랭이 등)으로 포장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소비지 출하에 있어서는 산지어시장에서 경락한 물량을 출하자가 재포장 출하하고 있으며 포장방법은 선어의 경우 약 80% 정도는 스티로폴 어상자를 사용하고 20% 정도는 나무상자를 사용하는데 어상자 내에 비닐로 내포장 후 빙장을 시키고 있으며 가공식품은 플라스틱용기(젓갈류 등)와 스티로폴 상자를 병행 유통시키고 있다. 산지에서 내륙지로의 출하자는 산지의 도매시장중매인 및 대규모어업자, 출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어업자와 출하단체의 출하는 어협 또는 어련에서 취급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출하수단은 주로 화물트럭 및 철도에 의존하는데 1982년 수산물수송량 구성비를 보면 화물트럭 의존도는 91.1%, 철도가 8.5%, 선박 등 기타 의존도는 0.4%이다. 이와 같은 수단에 의하여 출하된 물량은 소비지 중앙도매시장에 상장되는데 이는 도매시장 간에 전화로 상담하는 상대매매(사전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수송비의 부담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고 어대금은 매매일로 부터 1~4일 후 송금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 취급물량에 대한 출하자별 평균 점유율은 산지출하업자(산지중매인 및 출하단체)가 65%, 대규모어업자 26%, 타소비시장 전입이 4%, 기타 5% 정도로서 이중 생선품은 산지출하업자가 93%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냉동품은 대규모어업자가 57%, 가공품은 산지출하자가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 4)

표 4 중앙도매시장 취급물량의 출하자별 점유율

(%)

구 분	산 지 출 하 업 자 (산지중매인, 출하단체)	대 규모 어 업 자	타 소 비 시 장	기 타
계	65	26	4	5
생 선 품	93	3	3	1
냉 동 품	29	57	6	8
가 공 품	76	16	4	4

자료 : 농림수산성.

표 5 6대도시 중앙도매시장 취급고

단위 : 천%, 백만원

시 장 별	1981		1982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2,108	1,516,103	2,085	1,761,953
東 京	824	696,009	818	734,962
橫 濱	257	196,428	264	210,174
名 古 屋	335	209,085	326	215,893
京 都	140	111,124	125	115,679
大 阪	368	303,447	367	325,544
神 戸	184	148,019	185	159,701

자료 : 수산년감(일본수산사 1983/1984).

5. 소비지도매시장의 일반적 추세

전국의 중앙도매시장 중 東京, 橫濱, 名古屋, 京都, 大阪, 神戶 등 6大都市市場은 광역 거점화하고 있는 추세로써 1982년도 이들 6대도매시장에서의 취급고는 2,085 천%, 1,761,953 백만엔을 취급했으며 전국시장의 점유율은 수량면에서 52% 금액면으로 56%를 점하고 있다. 이들 6대 도시시장은 인근의 위성도시에 물량을 재반출 유통시킴으로써 3중경매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있어서도 점차 상대매매와 제3자에 의한 판매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매매물량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며 희망가격 제시에 의한 조건부위탁도 늘고 있다.

(표 5)

6. 수산물 조정보관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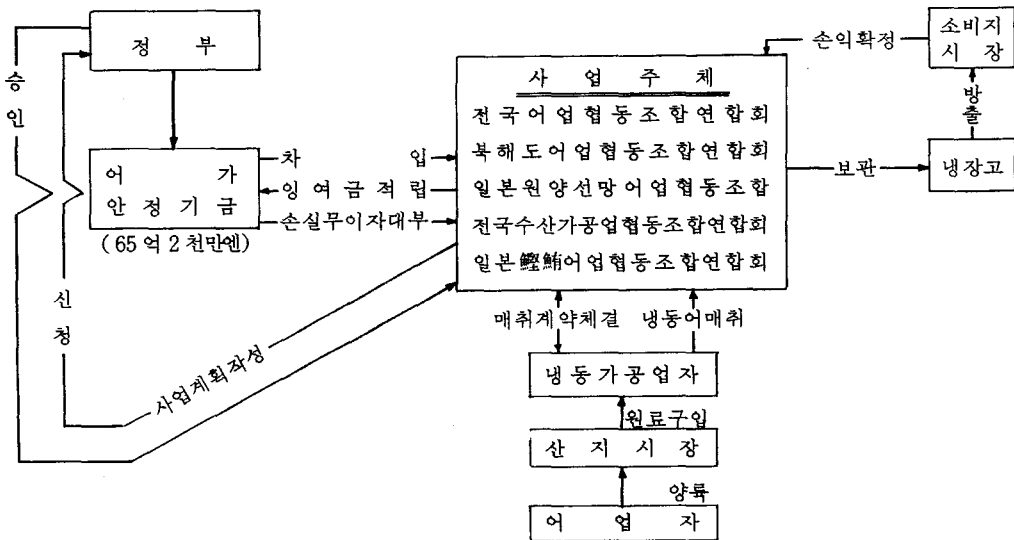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수협 가격지지 및 안정사업과 같은 수산물 조정보관업무를 1975년 12

월 시작했다. 동사업의 주체는 전어련, 북해도어련, 일본원양선망조합, 수산가공업어련, 일본鯉鮪어련 등 5개단체로 되어 있으며 기금의 출연은 정부 3억엔, 사업주체 2억엔, 정부용자 38억엔, 조정보관사업자금 22억 2천만엔, 도합 65억 2천만엔으로 운영은 재단법인 "어가안정기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들 5개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냉동가공업자, 산지시장, 어업자, 소비지시장 등과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사업계획을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수산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사업수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수협의 가격지지사업과 거의 같으나 사업수행결과 결손 발생시 결손액의 80%를 무이자로 용자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2)

사업대상어종으로서는 고등어, 삼치, 멸치, 전갱이, 오징어, 명태 등 다획성어종과 해태, 건미역, 염장미역 등 해조류, 가다랭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 원양어류와 이밖에 어분 원료로 이용되고 있는 다획성어종으로 되어 있다.

그림 2 사업운영체계도



7. 수산물 유통정보체제

수산청 주관 하에 수산물유통정보 서어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생산어민과 소비자에게 정확

신속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생산어민에 대해서는 1주간 항구별 양육량 및 위판가격을 무선, 신문, 라디오, 게시판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전달되고 있으며 각 항구의 어시장

에서는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해서 독자적으로 대어민부선방송을 실시하기도 한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주간지 소비지별 가격동향을 신문,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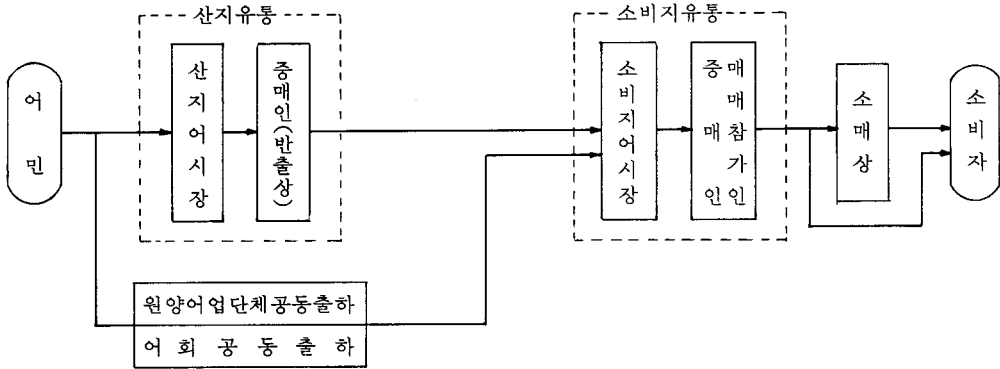
### Ⅲ. 대만의 수산물 유통현황

#### 1. 유통경로

대만의 수산물유통체제는 정부가 관장 운영하는

고 있다. 유통경로는 5~6 단계로 산지와 소비지에서 각각 2 단계, 그리고 소비지에서 소비자까지 1~2 단계로 되어 있다. 즉 그림 3 과 같이 생산어민, 산지어시장, 중매인(반출상), 소비지어시장 중매인 및 매참인,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밖에 생산어민으로부터 산지어시장을 거치지 않고 원양어업단체 및 漁會공동출하를 거쳐 직접 소비지어시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3 대만의 수산물 유통 경로도



자료: 대만성 어회 제공.

#### 2. 도매시장(어시장)의 개설 및 운영방법

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은 縣, 鎮, 市單位로 1 도시 1 시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설자는 산지의 경우 漁會(사단법인)로, 소비지인 경우는 縣, 鎮, 市정부로 하고 각 정부공무원과 漁會임원으로 구성된 5~7명의 "시장관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소비지의 운영자는 어시장관리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고 어시장 主任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임의 임명은 시장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정부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산지의 운영자는 漁會이다.

중매인은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어시장의 추천에 의거 지방정부가 승인한다.

시장의 시설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

하고 민간투자는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운영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장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가운데 행정명령에 의한 강제상장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운영주체를 관민공동체로 단일 독점시장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가. 산지시장

산지어시장의 거래제도는 漁會공동출하, 원양어업단체공동출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제상장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양록은 입항순위에 의하여 하며 양록단체는 어민으로 구성된 소규모어시장의 노동조합이 담당한다. 노임의 결정은 선주단체와 노조간에 협의 결정하고 있다. 배열은 검근 후 실시하고 위탁자는 어민으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위탁 하에 수지호가 또는 상대매매로 판매하고 있으며 상대매매는 객주거래 등 인과관계에 의하여 주로 주간입



항어선에 이루어지고 있다. 판매단위는 kg단위로 하되 저급어종이나 비식용어종은 상자단위로 쓰고 있다.

위판수수료는 환원수수료 없이 2.5%를 징수하고 경매원의 자격은 漁會직원중 경매능력보유자(3~5년 경력)를 이사장(조합장)이 임명한다.

매수인은 중매인, 매매참가인으로 구성되며 漁會의 추천에 의거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고 거래한도는 보증금 또는 담보물 제공 범위 내에서 수시 조정하고 있다. 매수인의 수수료는 2~5%이다. 어대금정산은 어민에 대해 1~3일, 대중매인은 3일간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잉여금은 시설투자 또는 어민복지증진에 활용되거나 회원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산지어시장의 법적성격은 협동출자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의 출자가 없으며 운영형태는 이사회중심으로 운영하고 이사장은 선원출신이어야 하며 회원은 갑, 을로 구분, 갑은 선원, 을은 선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어시장 내에는 진료소, 훈련소, 유치원, 구판장, 목욕탕, 이발관, 식당, 무선국 등 어민복지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대만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객주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 즉 양륙량의 50~80%를 객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거래형태는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구매하여 선주명의로 반출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부담조건으로 장내에서의 상대매매로 출하하거나 영어자금대출 후 어획물 매취권을 독점하기도 한다.

#### 나. 소비지 어시장

소비지어시장의 거래제도도 산지어시장과 마찬가지로 강제상장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역은 어시장의 직원 중 노무원이 담당하고 반입순위에 따라 배열한다.

물량은 산지중매인과 출하단체의 공동출하로 확보하고 판매방법은 kg단위로 수지호가나 상대매매로 하고 있는데 수지호가방법이 95%를 점하고 있다.

상장수수료는 대북시장의 경우 2.5%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중 0.5%는 환원되고 실수수료는

2.0%이다.

경매원의 자격은 도매시장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어시장의 주임이 임명한다. 중매인 및 매매참가인 등의 매수인은 소매점포소유자로 어시장이 지정하며 보증금 및 2인 이상 立保한 담보물 제공범위 내에서 거래한도를 수시 조정하고 있다.

어대금정산은 출하자에 대해 당일로 하며 중매인에 대해서는 3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 3. 포장 및 출하방법

입상작업은 대부분 선상에서 이루어지며 어상자는 3종류가 있는데 “플라스틱 어상자”는 동결용으로 사용되고, “나무상자”는 선어유통으로, “대바구니”는 담수어로 사용되고 있다.

입상형태는 과량 및 혼합 입상으로 전근대화적이며 내륙소비지 출하시에는 재입상 빙장하여 유통시킨다.

어상자대금은 경락가격에서 제외시키며 매수인이 어상자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어민에게 어상자대금을 별도 지불하고 있다. 대만정부에서는 포장개선사업으로 1975~1980년에 냉동용 종이상자 5만개를 시험제작하여 보급한 바 있으나 선원의 선별입상작업 기피로 실패하고 말았다.

산지에서 내륙소비지로의 출하에 있어서는 산지어시장 중매인과 원양어업단체 및 객주에 의존하고 있다.

중매인은 자기계산 책임 하에 소비지 어시장에 출하하고 있고 원양어업단체는 전국 42개 시장에 정부의 일정출하 의무량을 공동출하하고 있다.

원양어업출하단체는 1964년 7월 정부방침에 의거 원양어선 양륙지정항구인 高雄과 基隆지역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소비지 직출하로 유통단체 단축과 경비절감을 통한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기 위했으나 객주세력의 연군해 어획물의 위장 직출하로 큰 성과는 보지 못한 실정이다.

출하수단으로써 선어 및 냉동어류는 주로 화물냉장트럭을 이용하고 있으며 담수어는 활어조가 완비된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

#### 4. 어민직출하 및 유통정보체제

대만에서는 우리나라 및 일본처럼 수급조절을 위한 가격지지 및 안정사업의 조치는 아직도 없으나 수산물의 유통개선을 위해 1979년 10월 어민직출하 유도기구를 설립하여 반출증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적극 확대키 위한 조치로서 어민직출하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원양어업에 대해서도 공동출하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에서의 수산물 유통정보체제는 전국적인 정보시스템은 없다. 다만 산지의 각 어시장에서는 독자적으로 연구해어선을 대상으로,高雄과基隆지역에서는 원양어선에 대해 매일 20분간씩

kg당 위판가격과 양륙물량, 기상 등에 관하여 무선국을 통하여 방송하고 있을 뿐이다.

#### 참 고 문 헌

- 1) 농수산물 수급 및 유통제도(농수산부 1983).
- 2) 일본국 수산물유통실태조사보고서(수산청 1985. 6.24~6.30).
- 3) 어업백서(일본 농림통계협회 昭和 59년도).
- 4) 수산물유통통계연보(일본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昭和 58년도).
- 5) 수산년감(일본 수산사 1983/1984).
- 6) 외국(일본, 대만)의 수산물 유통현황 조사보고서(수협중앙회 1981.5.17~5.30).

## 어선검사의 필요성

- 선 원, 선 주 ——— 생명보호, 재산보호
- 국 가 ——— 운항질서유지  
어업질서유지  
피납방지

